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오늘의 종신보험 Plus**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VIP 종신보험 Plus)**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사업방법서

(사업 방법서 별지)

##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오늘의 종신보험 Plus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VIP 종신보험 Plus)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오늘의 종신보험 Plus - 보장형 계약

(최초계약의 가입금액이 3억 이상인 계약의 경우 상품명을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VIP 종신보험 Plus - 보장형 계약” 으로 함)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오늘의 종신보험 Plus - 적립형 계약

(보장형 계약의 최초 가입금액이 3억 이상인 계약의 경우 상품명을 “무배당 변액유니버설 VIP 종신보험 Plus - 적립형 계약” 으로 함)

(다만, “25.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만 적용 함)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장형 계약)

#### 2-1. 기본보험료 부분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가입나이 범위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종신	종신	5	년	만15	70	만15	70
종신	종신	7	년	만15	70	만15	70
종신	종신	10	년	만15	69	만15	70
종신	종신	15	년	만15	65	만15	65
종신	종신	20	년	만15	60	만15	60
종신	종신	25	년	만15	55	만15	55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종신	종신	70	세	만15	65	만15	65
종신	종신	80	세	만15	68	만15	70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2-2.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이하 “추가 납입보험기간” 이라 한다.

(적립형 계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전기납	만15세~70세(전환시점의 나이)		월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

- (1) 기본보험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 (2) 기본보험료의 연간납입한도는 아래와 같다.

-연간납입한도(36개월(36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 × 12 × 100%
-연간납입한도(37개월(37회 납입) 이후) = 기본보험료 × 12 × 200%

다만, 계약유지보증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연간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보험기간 종료일 - 1년」 까지 납입할 수 있다.
- (3)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라 "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 정기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이다. 다만, 기본보험료 부분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정기추가납입을 할 수 없다.
  - 수시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이다.
- (4)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요약>

구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납입기간(년) × 12) × 1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5) (4)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후 경과년수 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 12)의 100%(이하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한도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6) (4) 및 (5)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 12)의 1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 (7) (추가)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8) (7)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4)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9) 기본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로 한다.

다. 연장보험료

(기본)중도인출로 인하여 계약유지보증이 단축되거나 기본보험금액이 하락한 경우, 이 단축된 기간의 연장 또는 이 기본보험금액의 복원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적립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기본보험료의 납입은 최소 10만원과 '25.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라' 의 제(8)호에서 정한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의 0.5% 중 큰 금액 이상 최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만 원 단위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다. 다만,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적립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른다.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로부터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 전환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times$  12)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전환 후 경과년수는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④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로부터 경과월수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 전환 후 경과년수별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 6.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기본보험료의 경우 기본보험료 이상 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함) 다만,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적립형 계약)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기본보험료의 경우 기본보험료 이상 납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함)

다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7.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가입가능한 보험가입금액	할인율
2억9천6백만원 이하	0%
3억원 이상 ~ 3억9천5백만원 이하	1%
4억원 이상 ~ 4억9천4백만원 이하	2%
5억원 이상 ~ 5억9천3백만원 이하	3%
6억원 이상 ~ 9억8천9백만원 이하	4%
10억원 이상	5%

- \*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위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으로 인하여, 높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가, 그 보다 낮은 보험가입금액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보험가입금액 구간의 가입을 제한한다.

예) (가) 보험가입금액 3억9천6백만원 : 할인 후 보험료 100,000원

(나) 보험가입금액 4억원: 할인 후 보험료 99,000원

(나)의 할인 후 보험료가 (가)의 할인 후 보험료보다 낮기 때문에, (가)의 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제한함

나. 보험료 할인은 보장형 계약에만 적용되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때에는 보험료의 할인을 취급하지 않는다.

##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가. 회사가 승낙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에 한하여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의무납입기간(36개월(36회 납입))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은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형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나.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다.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다만, 계약자의 임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마’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계약자적립액(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 라.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계약의 특별계정내 (기본)계약자적립액은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마’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의 (기본)계약자적립액(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날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기본)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 마. 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바.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공제되지 않은 (기본)월대체공제액을 각 펀드에서 공제한다.

사. 적립형 계약의 경우 ‘가’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아. ‘라’ 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부분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의 (추가)계약자적립액은 추가납입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 (다만, 기본보험료 부분의 계약유지보증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추가)계약자적립액도 일반계정으로 인출된다.)

##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 기준에 따라서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중도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부가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보장형 계약)

### (1) (기본)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보험년도 기준 년 4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할 수 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이다.
- 인출 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기본)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추가)중도인출

계약일 이후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추가)계약자적립액을 인출 할 수 있다.

-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추가)해약환급금의 90%이다. 다만, (추가)해약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인출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중도인출은 만원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해약환급금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최소 단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형 계약)

(1)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기본)계약자적립액을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할 수 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이다.
-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 항에 의하여 중도인출을 할 경우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다. ‘가’ 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보장형 계약)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적립형 계약)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보장형 계약의 경우 (기본)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본)중도인출로 인하여 단축된 계약유지보증기간은 연장보험료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마. ‘가’ 항에 의하여 적립액의 중도인출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바. 보장형 계약의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기본)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기본)해약환급금(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생활자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즉시 (기본)해약환급금(다만, 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가’ 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액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한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다만,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보험계약적립액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을 따른다.

마.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사.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아. 보장형 계약의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 14.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 항의 사망보험금 중 기본보험료 부분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유지보증이 유효할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한다.

- (1) 기본보험금액
- (2) (기본)계약자적립액 × 105%
- (3) (기본)기납입보험료

다. 보장형 계약의 경우 ‘가’ 항의 사망보험금 중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추가납입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한다.

- (1) (추가)계약자적립액
- (2) (추가)기납입보험료

라. ‘나’ 항의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본)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연장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 해당 연장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나’ 항의 (기본)기납입보험료 및 ‘다’ 항의 (추가)기납입보험료라 함은 "17.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바. ‘나’ 항의 (기본)계약자적립액 및 ‘다’ 항의 (추가)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한다.

사.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액의 합계를 말한다.

#### 15. 최저사망보험금 및 계약유지보증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15-1. 기본보험료 부분 관련 내용

가. (기본)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다. 계약유지보증기간” 의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 부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보증 생활자금 지급액을 최저보증한다.

나. 계약유지보증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바’ 항의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 ‘충분’ 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다’ 항의 계약유지보증 기간 동안 사망시 기본보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계약유지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 이라 한다)

보증기간에 따라 종신보증, 80세보증 및 65세보증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80세 보증기간 및 65세 보증기간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각각 80세 및 65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이다. 최초 가입할 때 보증기간은 종신이며, ‘바’ 항의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보증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가입나이가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최단 보증기간은 80세 보증으로 한다.

라. 계약유지보증 기준보험료(이하 "기준보험료"라 한다)

해당 보증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기본)계약자적립액으로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해야할 최소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는 별도)를 말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 기준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종신보증 기준보험료, 80세보증 기준보험료 및 65세보증 기준보험료로 구분된다.
- (2) 계약자가 (기본)계약자적립액으로 실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종신보증 기준보험료이며, 80세보증 기준보험료와 65세보증 기준보험료는 계약유지보증기간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로 계약유지보증 테스트에만 적용되며,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는 아니다.
- (3) (기본)중도인출이나 연장보험료납입에 의해 기본보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마. 순납입보험료

- (1) 기본보험료 및 연장보험료의 합계에서 (기본)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2)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순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3)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되어 (기본)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경우에 순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만큼 감소한다.

[순납입보험료 요약]

순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	연장보험료
		-	(기본)중도인출금액
		-	월대체공제된 특약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

- (4)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순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감액 후 순납입보험료	=	감액 전 순납입보험료	×	$\frac{\text{감액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	----------------	---	---

바.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보험기간 중 계약유지보증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한 순납입보험료와 보증기간별 기준보험료의 누계액을 비교하여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1) 순납입보험료가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이상일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는 '충분'으로 판정된다.
- (2) 순납입보험료가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미만일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는 '부족'으로 판정된다.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요약]

조 건	결 과
순납입보험료 ≥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충 분
순납입보험료 < 해당 기준보험료 누계액	부 족

사. 계약유지보증 시작

계약일로부터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으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연장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유지보증이 유효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약유지보증기간 동안 (기본)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증의 시작을 말한다. 다만, 납입기간 중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 '바' 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마지막 날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계약유지보증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아. 계약유지보증기간의 단축

- (1) 계약일로부터 매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가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기본보험료 또는 연장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증기간이 단축된다는 안내를 하게 되며, 안내된 기간 안에 기본보험료 혹은 연장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안내된 기간의 다음날부터 보증기간은 단축된다. 다만,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이후에 계약유지보증 테스트 결과가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입최고(독촉)없이 즉시 보증기간을 단축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기본)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보증기간의 단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3) 보증기간의 단축은 종신보증으로부터 80세 보증, 65세 보증 및 보증소멸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대출 및 (기본)중도인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 이상의 보증기간의 단축이 발생할 수 있다.
- (4) 계약유지보증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후의 (기본)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자. 계약유지보증기간의 연장

- (1) 기본보험료 납입에 의한 연장  
계약자는 보증기간이 단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하 '보증기간 연장시한')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현재 보증기간으로 단축된 시점으로부터 보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날까지의 연장을 위하여 납입해야하는 금액(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서 가장 긴 보증기간을 최고 한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2) 연장보험료 납입에 의한 연장  
(기본)중도인출로 인하여 보증기간이 단축된 경우 계약자는 보증기간 연장시한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연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서 가장 긴

보증기간을 최고 한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의한 연장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연장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환시점에 연장가능한 보증기간으로 연장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5) 소멸한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보증이 소멸한 이후 미납된 계약유지보증비용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한다.

## 15-2.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관련 내용

### 가. (추가)최저사망보험금

추가납입보험기간 중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추가)기납입보험료를 말한다.

### (적립형 계약)

#### 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26.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참조)을 말한다.

## 16.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 (보장형 계약)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나. '가'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 후 2주일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승낙일 통보 후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동일 비율로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기본)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는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단,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동감액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23.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립형 계약)

가.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일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계약 심사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증액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최소한 2개월분의 월대체공제액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나. '가' 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나' 항의 승낙일 통보 후 증액 및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으로 기본보험료가 회사가 정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최저한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27.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마.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기본보험료가 회사가 정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7.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17.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 (보장형 계약)

##### 17-1. (기본)기납입보험료

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연장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계약자가 (기본)중도인출한 경우 (기본)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인출 후 (기본)기납입보험료}}{\text{(기본)기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다. 기본보험금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frac{\text{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text{(기본)기납입보험료}} = \frac{\text{감액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라.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본)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마. (기본)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는 경우( '23.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에 따라 기본보험금액을 자동감액한 경우를 포함)의 (기본)기납입보험료는 (기본)중도인출 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 (기본)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연장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바. 기본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단,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한다)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본다.

### 17-2. (추가)기납입보험료

가.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계약자가 (추가)중도인출한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text{(추가)기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

다. (추가)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의 (추가)기납입보험료는 (추가)중도인출 후 (추가)기납입보험료에 해당 중도인출 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기본보험료의 자동인출납입” 에 의해 해당월의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추가)해약환급금에서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인출한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의 계산은 같은 호 나. 를 준용한다.

마.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정기중도인출 서비스” 에 의해 (추가)해약환급금에서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된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의 계산은 같은 호 나. 를 준용한다.

### (적립형 계약)

가. 적립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

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25.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사'항의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나. 중도인출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matrix} \text{인출 후}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begin{matrix} \text{인출 전}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frac{\text{인출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begin{matrix} \text{인출 후}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begin{matrix} \text{인출 전}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frac{\text{인출 후 (추가)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추가)계약자적립액}}$

다. 기본보험료 감액 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기납입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begin{matrix} \text{감액 후}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begin{matrix} \text{감액 전}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matrix}$	×	$\frac{\text{감액 후 (기본)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전 (기본)계약자적립액}}$
--	---	--	---	---

## 18.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

### 18-1. (기본)월대체공제액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에는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 (기본)계약유지보증비용을 말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7개월(37회 납입) 이후

월계약해당일의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 (기본)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기본)계약유지보증비용, (기본)계약체결비용 및 (기본)계약관리비용((기본)계약관리비용 중 (기본)기타비용 제외) 및 선택한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18-2. (추가)월대체공제액

월계약해당일의 (추가)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 (추가)위험보험료 및 (추가)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적립형 계약)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사항

(보장형 계약)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 이내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7개월(37회 납입) 이후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6개월(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기본)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의 (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는다.

- (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이 없는 경우
- (3) (기본)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적립형 계약)

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한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 20.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1.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계약유지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1)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부분

- ① 장기채권형 : 펀드 듀레이션의 장기(최소 5년이상) 유지를 목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

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② 인덱스주식형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1-2)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및 적립형 계약

- ① 채권형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② 가치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③ 성장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시장평균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④ 미국주식형 3호 :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표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달러표시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달러표시 우량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표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⑤ 글로벌주식형 2호 :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⑥ 인덱스주식형 2호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⑦ 아시아주식형 2호 : 아시아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⑧ 유럽주식형 : 유럽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⑨ 글로벌채권형 : 해외 각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⑩ 브릭스주식형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⑪ 골드투자형 : 금 상품 가격 추종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 등 유동성 자산(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을 포함)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⑫ 글로벌 고배당 주식형 펀드 : 전세계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 ⑬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⑭ 글로벌 멀티인컴 펀드: 전세계 고배당 주식, 채권 및 대안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⑮ MMF 형: 단기채권,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⑯ 배당주식형 2호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과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는 펀드

⑰ 안정 포트폴리오형 :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⑱ 중립 포트폴리오형 : 중립적인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

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⑲ 적극 포트폴리오형 :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⑳ 달러단기채권형 : 미국 달러화(USD)로 발행된 국채, 회사채 등 단기 달러 표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MMF 및 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㉑ 미국채권형 :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표시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미국 외 발행자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 및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㉒ 글로벌 IT 섹터 : 전세계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IT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㉓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 제약, 생명과학, 의료장비, 헬스케어 서비스 등 전세계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㉔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 통신, 인터넷,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전세계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㉕ 중국주식형 : 중국 본토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㉖ 글로벌 ESG 주식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요소가 유명한 산업을 비롯하여 ESG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4)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1-1)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부분

(기준 : 특별계정적립액)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계	
					매년	매일
장기채권형	0.34%	0.02%	0.02%	0.02%	0.40%	0.0010958904%
인덱스주식형	0.41%	0.15%	0.02%	0.02%	0.60%	0.0016438356%

(1-2) 보장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및 적립형 계약

(기준 : 특별계정적립액)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 보수	합 계	
					매년	매일
채권형	0.34%	0.10%	0.02%	0.02%	0.48%	0.0013150685%
성장주식형 2호	0.69%	0.21%	0.02%	0.02%	0.94%	0.0025753425%
가치주식형 2호	0.69%	0.23%	0.02%	0.02%	0.96%	0.0026301370%
미국주식형 3호	0.69%	0.05%	0.04%	0.02%	0.80%	0.0021917808%
글로벌주식형 2호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인덱스주식형 2호	0.69%	0.20%	0.02%	0.02%	0.93%	0.0025479452%
아시아주식형 2호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유럽주식형	0.40%	0.05%	0.04%	0.02%	0.51%	0.0013972603%
글로벌채권형	0.25%	0.05%	0.04%	0.02%	0.36%	0.0009863014%
브릭스주식형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골드투자형	0.30%	0.05%	0.04%	0.02%	0.41%	0.0011232877%
글로벌 고배당주식형	0.50%	0.10%	0.04%	0.02%	0.66%	0.0018082192%
글로벌 하이일드채권형	0.50%	0.08%	0.04%	0.02%	0.64%	0.0017534247%
글로벌멀티인컴	0.50%	0.05%	0.04%	0.02%	0.61%	0.0016712329%
MMF 형	0.15%	0.01%	0.02%	0.02%	0.20%	0.0005479452%
배당주식형 2호	0.69%	0.30%	0.02%	0.02%	1.03%	0.0028219178%
안정 포트폴리오형	0.41%	0.05%	0.04%	0.02%	0.52%	0.0014246575%
중립 포트폴리오형	0.47%	0.05%	0.04%	0.02%	0.58%	0.0015890411%
적극 포트폴리오형	0.52%	0.05%	0.04%	0.02%	0.63%	0.0017260274%
달러단기채권형	0.15%	0.05%	0.04%	0.02%	0.26%	0.0007123288%
미국채권형	0.25%	0.05%	0.04%	0.02%	0.36%	0.0009863014%
글로벌 IT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중국주식형	0.45%	0.02%	0.04%	0.02%	0.53%	0.0014520548%
글로벌 ESG 주식형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1)의 표에서 정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계약자적립액 이전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투입비율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나’ 항 (1-1)에서 규정한 펀드 중에서 회사가 정하는 범

위 내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 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30% 이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나’ 항 (1-2)에서 규정한 펀드 중 최대 10개까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또한,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투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로 투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을 변경하거나 추가납입보험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펀드 적립액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액의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펀드 적립액 이전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a) 기본보험료 부분

펀드 적립액 이전 직후 (기본)계약자적립액의 장기채권형펀드 적립액은 전체 (기본)계약자적립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 변경 및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의 계약자적립액 이전 등으로 인해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 부분에서 보유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최대 12개이다.

② 회사는 ①에 따라 펀드 적립액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한다.

③ 회사는 ①에서 계약자적립액 이전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적립형 계약)

(1)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나’ 항 (1-2)에서 규정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되며,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또한, 투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로 투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가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을 변경하거나 추가납입보험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3) 펀드 적립액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액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①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펀드 적립액의 이전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회사는 ①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금이체할 때 기준가격

① 자금이체할 때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아래의 ②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한다.

- (a)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b)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c)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
- (d)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 (e) 펀드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f)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실행하는 경우
- (g) 라이프싸이클 펀드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h) 평균분할투자 옵션의 실행으로 최초 MMF형 펀드 투입 이후 MMF형 펀드에서 계약자가 정한 다른 펀드로 투입하는 경우
- (i)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의해 자동감액된 경우
- (j) 기본보험료의 자동인출납입을 실행하는 경우
- (k) 추가납입보험기간이 끝난 경우
- (l) (추가)해약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일 때 (추가)해약환급금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

(4)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①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⑦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차.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⑤ ① 내지 ④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하여 약관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 (다만, 월대체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된 경우
- (7)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의해 자동감액된 경우
-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 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따른 이체 기준가격 적용일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3.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자금을 선지급한다.

가.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계약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이 가능하다.

- (1)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 (2) 계약유지보증 수준이 '중신보증'인 계약
-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 (4) 생활자금 개시연령이 계약일로부터 15년과 주계약 납입기간 중 큰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및 90세 이내인 계약

## 나. 주요 내용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생활자금 개시나이와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며, 생활자금 개시나이는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 (2)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한 생활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으로 15년, 20년 또는 25년으로 한다.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이 중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선지급이 중지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3) 선지급 대상 기본보험금액 및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최초 생활자금을 선지급하기 직전 기본보험금액에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에 따른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 대상 기본보험금액으로 한다.
    - (a)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6.0%
    - (b)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4.5%
    - (c)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3.6%
  - ② 최초 생활자금을 선지급하기 직전 보험가입금액에 계약 체결 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에 따른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 (a)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6.0%
    - (b)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4.5%
    - (c)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3.6%
- (4) 생활자금 선지급시 생활자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기본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기본)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 다만, 이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생활자금을 최저보증한다.

  - ① 최저한도의 생활자금은 매 생활자금 지급 직전 시점의 생활자금 기준적립액 중 해당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생활자금 기준적립액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으로 장래 최저한도의 생활자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생활자금 기준적립액 계산 시, 계약유지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생활자금 선지급 방법

- (1)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활자금 선지급 대

상 기본보험금액만큼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기본보험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생활자금으로 하여 매년 생활자금 선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 (2)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지급기간 매년 생활자금 선지급 해당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에 생활자금 선지급 해당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 선지급 해당일로 하여 지급한다.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린다.
- (4)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 라. 생활자금 선지급 후의 운용 방법

- (1)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기본보험금액 및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생활자금 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된다.
- (2)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생활자금 개시연령 계약해당일 전 12개월 내 생활자금 선지급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취소한다. 또한,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이 취소된 이후에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3) 생활자금 선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유지보증기간이 종신보증 미만으로 단축되고, 그 단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유지보증기간을 종신보증으로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자금 선지급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계약자는 생활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4) 계약자는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언제든지 생활자금 선지급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 선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계약자는 생활자금 선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5)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 선지급은 중지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생활자금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 (6) 최초 생활자금 지급일 이후부터 마지막 생활자금 지급일까지 (기본)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24.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보장형 계약에 한함)의 (기본)계약자적립액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기본)계약 자적립액에 가산한다. 단, (기본)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기본)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는 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기본)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cdot \text{펀드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text{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특별계정 (기본)계약자적립액} \\ \times \text{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times 60\%$$

- (취) 1.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은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의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2. 월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란, “21.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다.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매년 특별계정적립액에 곱하는 비율을 월단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생활자금 지급이 있을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전일 말의 특별계정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생활자금 지급 직전 (기본)계약자적립액을 의미한다.

## 25.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계약인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은 계약
- (2) 계약유지보증이 시작되지 않은 유효한 계약
- (3) 전환 신청 당시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함)이 기납입보험료의 70%와 1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계약
- (4)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계약

나. '가'항의 보장형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할 때의 주계약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 (1) 보장형 계약의 가입금액이 3억 미만인 계약: 전부전환만 가능
- (2) 보장형 계약의 가입금액이 3억 이상인 계약: 일부(계약자적립액의 50% 이상이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또는 전부전환 가능

다. '나'항 (2)에 따라 보장형 계약에서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하는 경우 계약자는 전환비율을 50%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 '나'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중도인출금액, 기납입보험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및 순납입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되며,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은 아래에서 정의된 금액으로 한다.

(1)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보험가입금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보험가입금액}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2)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보험료}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3)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납입보험료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납입보험료의} \\ \text{합계}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보장형 계약에서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일부전환 이후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는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와 「일부전환 이후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보장형 계약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보장형 계약에서 (기본)중도인출 또는 (추가)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액을 계산한다.

$$\begin{array}{l}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이후} \\ \text{발생한} \\ \text{(기본)중도인출금액} \end{array}$$

$$\begin{array}{l}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중도인출금액의} \\ \text{합계}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이후} \\ \text{발생한} \\ \text{(추가)중도인출금액} \end{array}$$

(5) 보장형 계약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보험계약대출의} \\ \text{원금과 이자}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보험계약대출의} \\ \text{원금과 이자}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보장형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경우 「일부전환 이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계약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와 「일부전환 이후 발생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보장형 계약의 순납입보험료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순납입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순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7)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1 - \text{전환비율})$$

다만, 일부전환 이후에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약관 제2조 제1항의 “5. 보험료 관련 용어” 에서 “(4) 기납입보험료” 에 따라 계산한다.

(8)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begin{array}{l} \text{적립형 계약으로} \\ \text{전환하는}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납입보험료} \\ \text{해당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적립형 계약으로} \\ \text{전환하는}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 \text{해당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적립형 계약으로} \\ \text{전환하는}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기납입보험} \\ \text{료 해당액} \end{array}$$

$$\begin{array}{l} \text{적립형 계약으로} \\ \text{전환하는}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 \text{해당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기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text{전환비율}$$

$$\begin{array}{l} \text{적립형 계약으로} \\ \text{전환하는}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 \text{해당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일부전환 직전}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기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text{전환비율}$$

마. '가'내지 '다'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하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 (1)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50배 이상
- (2)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하

바. '가'내지 '다'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사.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

$$\begin{array}{l} \text{전환일의} \\ \text{적립형 계약의} \\ \text{계약자적립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전환 당시}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기본)계약자적립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전환 당시} \\ \text{보장형 계약의} \\ \text{(추가)계약자적립액} \end{array}$$

- (2) 보장형 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 적립액(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	×	전환비율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전환 당시 보장형 계약의 (추가)계약자적립액	×	전환비율

- 아. '사' 항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전환일의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계약 전환을 신청한 때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22.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를 적용하고,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자. '가'내지 '다'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교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1)호 또는 (2)호에서 정한 사람 중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교체할 수 없다.
- (1) 보장형 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자녀 중 1명
  - (2)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차. '자'항 (1) 또는 (2)에서 정한 자 중 1명으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 피보험자 및 교체 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한 경우의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교체 전 피보험자로 유지된다.
- 카.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타.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추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며, 특약이 추가된 주계약은 전부전환할 경우 적립형 계약, 일부전환할 경우 보장형 계약으로 한다.

## 26.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계약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서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납입보험료 해당액과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기본)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보장형 계약의 (추가)기납입보험료 해당액 +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 적립형 전환 후 납입하는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	---	--

나. 중도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인출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인출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frac{\text{인출 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	-----------------------------	---	---

다. 기본보험료 감액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은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감액 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감액 전 적립형 계약의 최저사망보증금액	×	$\frac{\text{인출 후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	-----------------------------	---	---

## 27.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증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기본보험료 증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이때 기본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별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하다.

또한,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기본보험료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다.

- 나. ‘가’ 항에 따른 기본보험료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신청 후 2주일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나’ 항의 승낙일 통보 후 변경된 사항은 회사의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으로 기본보험료가 회사가 정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최저한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16.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을 따른다.
- 마.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는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28. 기타사항

- 가.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이 보험을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한다.

다만,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은 계약자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 (1)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 (2)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 (3)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 ‘라.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참조)
  - (4) 무배당 저축보험 전환( ‘마. 저축전환에 관한 사항’ 참조)
-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 다. 계약자적립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액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 라.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이 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

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 (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 (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
- (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 (5)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
  - ②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6)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 (7)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주계약 (추가)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체 (추가)해약환급금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전환한다. 이때 추가납입보험기간은 연금전환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이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하다.

마. 저축전환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저축전환은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하 “저축전환”은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의 적용을 의미한다.)
- (2) 계약자가 이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 (3) 저축전환은 저축보험으로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 (4) 저축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해약환급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기본)해약환급금의 90%와 (추가)해약환급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전환 전 계약의 (추가)해약환급금을 전환하는 경우 전체 (추가)해약환급금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전환함)
- ⑤ 회사는 저축전환의 가입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차.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3)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카.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이하 “조기 계약전환 옵션”이라 한다)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조기 계약전환 옵션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계약(기본보험료를 36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 계약전환 옵션을 신청할 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2.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3. 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계약체결 당시 최대주주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주주명부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3) 계약자가 조기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이 계약의 잔여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고 해지한 후 이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한다.

- (4)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환된 상품의 약관 및 기초서류를 따른다.
- (5) 다만, (1) 내지 (4)에 의하여 조기 계약전환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6) (1)의 회사에서 정한 전환상품이라 함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말한다.